

# 2022년 국산 수산식품 구매이행 보증보험 지원사업 안내

## □ 사업 개요

- 중소 식품제조 및 식자재 업체의 국산 수산식품 공급업체와의 신용거래를 위한 「국산 수산식품 구매이행보증보험」 가입 시 보험료의 80%를 정부에서 지원
  - 보증금액 : 최대 1억원, 보증기간 : 1년 이내, 보험요율 : 0.440% ~ 4.106%
  - 보험사 : 서울보증보험(주)
    - \* 보증금액 및 보험요율은 신청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
- 접수 : [www.foodbiz.or.kr](http://www.foodbiz.or.kr) (aT식품기업지원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)
  - \* 오류 방지를 위해 chrome으로 접속 권장

## □ 지원 대상

- 
-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식품을 거래하는 업체
    -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 2에 의거 식품제조, 가공업 등록업체, 건강기능 식품제조업,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 업체, 즉석 판매제조·가공업, 식품소분·판매업 등
- 
- \* 위 지원대상 중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상 중소기업에 한함
  - \*\* 신청일 현재 기준 사업자 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하고, 거래실적(매출)이 있는 업체
  - \*\*\* 수입수산물, 농축산물, 가공 공정 없는 단순 유통 거래는 지원 제외

□ 지원 기간 : '22. 2. 14 ~ '22. 12. 20 \* 단, '22년 예산한도 내 지원

## □ 국산 수산식품 공급업체 (피보험자)

-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국산 수산식품 공급업체

## □ 지원 신청시 필요한 서류

- 신청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, 영업등록증 또는 영업허가증 사본
- 매출확인서(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/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재무제표)
- 국산 수산식품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
- 국산 수산식품 공급업체와 체결한 계약서, 견적서(거래명세서)
- 국산 수산식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원산지 표시거래 증빙 :  
원산지가 기재된 거래기록(계약서, 거래명세서, 원산지 증명서 등)
- 문의 :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산기획팀 061-931-0858

## □ 보증보험 가입시 필요한 서류 (서울보증보험)

-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발급한 「구매이행보증보험 지원대상 확인서」
- 국산 수산물식품 공급업체와 체결한 거래계약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서울보증보험(주)에서 요구하는 자료
- 보험가입 : 서울보증보험(주) 전국 지점 및 홈페이지 ([www.sgic.co.kr](http://www.sgic.co.kr))

## □ 기타사항

- (유의사항) 사업예산이 소진 시 국고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, 신청업체가 허위서류 또는 허위실적 등을 제출하거나 보증보험을 이용한 수입 수산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향후 3년간 지원에서 배제
- (실적제출)
  - 보증보험 증권 등록, [www.foodbiz.or.kr](http://www.foodbiz.or.kr) 마이페이지(식품기업지원관리시스템)
  - 사업 종료 후 국산 수산물식품 거래실적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, 미 제출시 차년도 사업지원 제외

## □ 붙임 : 국산 수산물식품 구매이행보증보험 지원절차

[붙임]

## 지원 절차

